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등의 설치 및 사용 금지에 관한 법률안

(조국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900 발의연월일: 2024. 10. 25.

발 의 자:조 국·서왕진·정춘생

이해민 · 김준형 · 황운하

차규근 • 신장식 • 김선민

김재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헌법은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함을 천명하고 있음.

그러나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밝혀진 인물의 흉상이 전국 곳곳에 산재해 있고, 이들의 공훈을 기리는 내용의 기념비가 현충시설로 지정되어 있거나 극동군사재판에서 전쟁범죄인으로 처벌받은 자를 찬양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또한,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의류 등에 사용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국민적 공분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임.

이에 친일반민족행위자, 극동군사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전쟁범죄인의 흉상 등 조형물을 설치하거나 이들의 공적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등을 설치·건립할 수 없도록 하고,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국내 제작·유통 및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국민의 올바른 역사인식

을 확립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려는 것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등의 설치 및 사용 금지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전쟁범죄인, 일본 제국주의 상 징물의 설치 및 사용을 금지하여 국민의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하 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친일반민족행위자"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제3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반 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하여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조사보고 서에 포함된 사람을 말한다.
- 2. "전쟁범죄인"이란 제2차 세계대전 중의 전쟁범죄에 관하여 1946 년 5월 3일부터 1948년 11월 12일까지 열린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 유죄로 선고 받은 사람을 말한다.
- 3.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깃발 또는 휘장이나 이러한 문양이 포함된 옷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친일반민족행위자, 전쟁범죄인,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설치 또는 사용 금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

- 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조형물 등의 설치 금지) 누구든지 친일반민족행위자 또는 전쟁 범죄인의 흉상 등 조형물을 설치하거나 이들의 공적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전시관을 건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금지) ① 누구든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국내에서 제작 또는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누구든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설치 및 사용 금지의 적용 배제) 친일반민족행위자 또는 전쟁범 죄인의 조형물,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역사의 재현을 위하여 영 화, 공연 또는 전시에 사용하거나 교육, 연구, 보도 또는 이와 유사 한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 또는 제5조를 적용하지 아 니한다.
- 제7조(과태료) ① 제4조를 위반하여 조형물을 설치하거나 기념관·전 시관을 건립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국내에서 제작 또는 유통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③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치된 조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친일반민 족행위자 또는 전쟁범죄인의 조형물을 설치하거나 이들의 공적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전시관을 건립한 자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해당 조형물 또는 기념관·전시관을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해체하거나 폐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